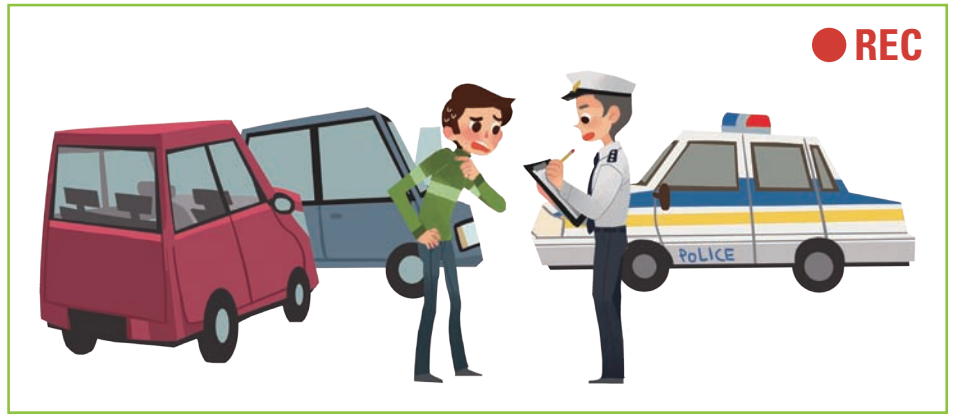


블랙박스에 포착된 무법자들에게도 인권은 있지 않습니다

제보영상 보도 시 유의할 점



언젠가부터 블랙박스는 차량 소유자들의 필수품이 되었다. 접촉사고 발생 시 상대방 운전자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주차 중 내 차에 상처를 내고 도망간 사람을 잡아야 할 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주요한 증거가 된다. 하지만 블랙박스는 이런 순간만을 선별적으로 촬영, 녹화해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의 모습까지도 블랙박스 영상에 담기게 된다.

내가 촬영된 줄도 몰랐던 블랙박스 속 영상이 블랙박스 소유자의 제보로 보도됐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본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주차장에서 일어난 돌발 상황으로 당황하는 운전자와 도로 위에서 경찰에게 항의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방송을 통해 보도됐고, 두 운전자 모두 방송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사건은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다른 사건은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차이점은 보도에서 운전자가 특정되었는지, 방송사가 운전자의 얼굴 및 차량 번호 등을 꼼꼼하게 모자이크 처리했는지, 보도의 공익성이 있는지 등이다. 즉, 시청자들에게 사고 예방과 안전 촉구를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방송에 동의한 바 없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되더라도 수인 가능한지가 문제이다. 중재부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비교 형량을 한다.

위 사례 중 돌발 상황에 부닥친 운전자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방송되어 신원이 노출되었다. 이에 방송사도 과책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면, 교통 지시하는 경찰에게 과격하게 항의하는 운전자는 공정한 공무 수행에 대한 과잉행위로서 공무원의 공적 신뢰 보호를 위해 언론이 비판할 수 있고, 교통소통을 방해하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보도의 공익성이 넓게 인정됐다. 또한 해당 방송사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충분히 하여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의 촬영자이자 소유자이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제삼자의 초상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적 권리로서 타인에 의해 포기되거나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없다. 더욱이 CCTV와 같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 터라, 우리는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 누구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당하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다. 설령 블랙박스 촬영에 대해 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동의의 범위가 방송 보도나 인터넷 게시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방송사가 제보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한 영상물일지라도 방송이나 공개 범위까지 제보자의 결정에 의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및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초상권)를 가지고,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등). 이러한 권리는 불법 행위자나 형사 피의자에게도 똑같이 보장된다.

따라서 방송사는 제보로 습득한 영상이 흥미롭고 보도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영상이 전달하는 위법한 행위 사실, 즉 사건 자체와 그 행위자가 구분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공익성이 상당한지, 단지 보도를 실감 나게 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인지도 다시 한 번 따져보기를 바란다.